

# 법무법인 대원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65, 301호 [우] 06595  
(TEL)02-3476-1271~3 (FAX)02-3476-1274

수 신: 리카온손해사정 주식회사

담당자: 김 중 철 차장님

발 신: 법무법인 대원서울(담당변호사 정 오 균, 김 형 식)

제 목: 농기계종합보험(자기신체사고 보상 여부)

-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보험계약에 관한 몇 가지의 법률적인 문제에 대한 자문에 대하여 회신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래의 의견은 귀사로부터 주어진 자료에 의한 순수한 법률적인 검토의견이며, 추가되는 자료 및 정확한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며, 최종결론은 법원의 판결에 의해 결정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4. 위 법률자문의 저작권은 법무법인 대원서울에 있으며, 무단 이용을 금하는 바입니다.

=====다 음=====

## I. 보험계약 사항 및 사고사항

### 1. 보험계약사항

- 보험종목및조건: 농기계종합보험(자기신체손해담보II)
- 계약자 및 피보험자 : 박 O O
- 증권번호 : 319-0869-6935-63
- 보험기간 : 2021. 3. 16. ~2022. 3. 16.

## 2. 사고사항

2021. 8. 28. 16:30경 평택시 포승읍 가장동길 78-7에서 트랙터 조향장치  
의 볼트를 피보험자 본인이 교체를 하려던 중, 볼트가 풀리지 않자 그라인  
더로 볼트를 잘라내기 위해 그라인더 날을 작동하다 그라인더 날이 이탈되  
며 피보험자 왼쪽 손목 부위를 다친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합니다).

## 3. 질의사항

가. 이 건 사고가 농기계종합보험 약관(자기신체담보II특별약관) 소유, 사용,  
관리 중에 보상하는 손해인지 여부

→이 사건 피보험자가 트랙터를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닐뿐더러 트  
랙터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보험에서 보장하는 사  
고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피보험자 농기계를 정비 및 관리시 발생한 사고일  
경우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자기신체상해가 트랙터의 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트랙터의 조향장치인 볼트가 풀리지 않아 이를 교체하기 위  
해 그라인더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농기계의 운행과는 상관없이  
발생한 사고에 불과하여 보상하는 손해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II. 질의사항 검토

### 1. 질문 가.항에 대한 검토

## 가. 관련규정

### [농기계종합보험약관]

제2장 배상책임 이외의 보장종목

제1절 자기신체사고

#### 제8조(보상하는 손해)

① 「자기신체사고」에서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농기계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농기계의 사고로 인하여 죽거나 다친 때 그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여 드립니다.

②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장하는 ‘농기계의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사고
2. 피보험농기계의 추락, 전복사고
3. 기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

#### 제10조(보상하지 않는 손해)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손해는 「자기신체사고」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피보험자의 고의로 그 본인이 상해를 입은 때. 이 경우 그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만 지급하지 않습니다.
2. 상해가 보험금을 받을 자의 고의로 생긴 때에는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금액

이 사건은 피보험자가 트랙터 조향장치의 볼트를 피보험자 본인이 교체를 하려던 중, 볼트가 풀리지 않자 그라인더로 볼트를 잘라내기 위해 그라인더 날을 작동하다 그라인더 날이 이탈되며 피보험자 왼쪽 손목 부위를 다친 사고로, 피보험자의 자기신체상해가 트랙터의 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보상하는 손해인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또한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한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하지 않는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은 보험자에게 있습니다.

## 나. 이 사건의 쟁점

위와 같이 자손담보에서는 보상하는 손해를 피보험농기계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와 피보험농기계의 운행 중 피보험농기계에 자동차, 다른 농기계 또는

다른 물체와의 충돌, 접촉으로 발생한 물체와의 충돌, 화재 또는 폭발, 피보험농기계의 낙하로 인한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가 자손담보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피보험자가 트랙터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트랙터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데, 특히 약관의 규정과 관련하여 트랙터의 운행의 의미가 문제됩니다.

#### 다. 관련 판례

농기계와 직접적인 판례는 없으나 농기계를 사용하던 중 사고에 관하여 자동차보험약관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운전 중 사고에 관한 유사판례를 살펴보면 자동차보험계약상 자기신체사고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대법원 2000. 12. 8. 선고 2000다46375, 46382 판결 참조), 이때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은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자동차가 반드시 주행상태에 있지 않더라도 주행의 전후단계인 주·정차 상태에서 문을 여닫는 등 각종 부수적인 장치를 사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참조).

#### 라. 운행으로 인한 사고

### (1) 운행으로 인한 사고의 의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조에서는 자동차의 “운행”의 개념을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에서는 자기신체사고의 자동차사고와 관련하여 『자동차보험 계약상 자기신체사고로 규정된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라고 함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소유, 사용, 관리하던 중 그 자동차에 기인하여 피보험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를 의미하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참조).

위와 같이 자동차보험에서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자동차사고를 피보험자동차의 운행 중 그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를 보상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이 사건 보험계약도 사실상 자동차보험의 규정과 사실상 동일하여 트랙터의 운행을 자동차의 운행과 다르게 해석할 여지도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트랙터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와 관련하여 운행의 의미는 자동차보험의 해석을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며, 결국 트랙터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는 트랙터를 용법에 따라 사용하던 중 그 트랙터에 기인한 사고를 의미합니다.

### (2) 용법에 따른 사용

한편 대법원에서는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여 자동차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한편 자동차의 당해 장치의 용법에 따른 사용 이외에 그 사고의 다른 직접적인 원인이 존재하거나, 그 용법에 따른 사용의 도중에 일시적으로 본래의 용법 이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위 용법에 따른 사용이 사고발생의 원인이 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면 역시 자동차의 사고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다8645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가 트랙터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 여부는 트랙터의 용도에 따라 그 구조상 설비되어 있는 각종의 장치를 각각의 장치목적에 따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인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마. 보험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이 사건

그렇다면 이 사건은 피보험자가 농기계인 트랙터를 운전하려던 중 왼쪽 바퀴가 흔들거려 확인해 보니 조향장치의 볼트가 헐렁거려서 볼트를 피보험자 본인이 교체를 하려던 중, 볼트가 풀리지 않자 그라인더로 볼트를 잘라내기 위해 그라인더 날을 작동하다 그라인더 날이 이탈되며 피보험자 왼쪽 손목 부위를 다친 것은 이 사건 피보험자가 트랙터를 운행하던 중에 발생한 것이 아닐뿐더러 트랙터의 용법에 따른 사용이라 할 수 없어 이 사건 보험에서 보장하는 사고라고 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2. 질의 나. 항에 대한 검토

(그라인더를 이용한 농기계 정비 및 관리시 발생한 사고일 경우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는지 여부)

피보험자는 헐거워 흔들거리는 부품을 탈거하고 새로운 부품으로 교환하는 수리를 하려고 하였으나 부품이 탈거되지 않자 그라인더로 이를 절단하는 방법으로 탈거를 시도한 것입니다.

위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사건에서 피보험자의 자기신체상해가 트랙터의 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사고로 트랙터의 조향장치인 볼트가 풀리지 않아 이를 교체하기 위해 그라인더를 사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라면 농기계의 운행과는 상관없이 부품을 교체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에 불과하여 보상하는 손해로 볼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2021. 9. 17.

법무법인 대원서울

담당 변호사 정 오 균, 김 형 식

